

생활 속 법률이야기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가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 원고 A씨는 총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육군3사관학교장은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장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제18조(퇴학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육군3사관학교 학칙의 하위문서인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의하면

- ▶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구 예규 제12조, 품위유지의무)
- ▶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본인이 음주를 하여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예규 제12조, 이하 구 예규의 해당 규정까지 통털어 ‘이 사건 금주조항’이라고 함)
- ▶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1급 사고’로서 이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 원칙으로 퇴학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구 예규 및 예규 제61조 제1호)

이에 원심은 이 사건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1.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 이들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한편 사관생도는 특수교육기관의 육군2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 따라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그 위임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생도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금주조항이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이유-1】

구 예규 제12조 제1호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사관생도에게 예외 없는 금주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예규 제12조 제1호는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본인이 음주를 하여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관생도에게 원칙적으로 금주의무를 부과하면서 부모님 상/기일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훈육대장의 승인을 얻어 음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규에 대해서

“사관학교의 설치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학교는 사관생도에게 교내 음주행위,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 중인 음주행위, 사적활동이라 하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생도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하는 행위,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활동을 하는 때에도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 예규가 지나치게 사관생동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합니다.

【판결이유-2】

두번째로 퇴학은 학적을 박탈하여 사관생도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교육상 필요 또는 학내 질서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중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61조에 의하면, 음주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1급 사고이고, 이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금주조항에 대해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